

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공시송달 공고

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12. 6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



- 건 명 :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- 근 거 :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및 동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
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 시행지침 중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사업장명 (청년명)	사업자 등록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(주)메○○ (안○연)	573-87- 02341	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처분	중도해지 사유발생일 (청년의 퇴사일)로부터 1개월 이내 중도해지 미신청	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계약 직권 중도해지 처분	수취인불명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 : 2024.12.06.~2024.12.20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이주원 (☎041-620-747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